

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주요내용

1. 투자신탁의 명칭 : 브이아이 사회책임투자 증권 투자신탁[주식]

2. 변경시행일 : 2023년 06월 16일

3. 변경사유

- ①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갱신
- ② 실제 수익률 변동성 변경(22.20% → 18.23%)
- ③ 투자대상자산 추가(환매조건부매수)
- ④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의무, 용어정리 등)
- ⑤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- ⑥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- ⑦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4. 변경사항

가. 집합투자규약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17조 (투자대상자산 등)	① 집합투자업자는 __ 운용한다. 1. (생략) 2.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 증권, 지방채증권, __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」 또는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 3.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」 또는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“자산유동화증	① 집합투자업자는 __ 운용한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 증권, 지방채증권, __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」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 3.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」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“자산유동화증

	<p>권"이라 한다)</p> <p>4. 내지 9.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___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내지 2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p>4. 내지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___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내지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</p>
<p>제19조 (운용 및 투자 제한)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___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___ 운용할 수 없다.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)</p> <p>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___ 투자할 수 있다.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가목의 것은 제외한다) 및 ___ 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「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」 또는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「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,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___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행위</p> <p>다. (생략)</p> <p>3. 내지 7. (생략)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___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___ 운용할 수 없다.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환매조건부매수</p> <p>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___ 투자할 수 있다.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가목의 것은 제외한다) 및 ___ 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___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행위</p> <p>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내지 7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0조 (한도 및 제한의 예외)</p>	<p>① (생략)</p> <p>②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등 ___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</p>	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등 ___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</p>

	<p>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③ 내지 ④ (생략)</p>	<p>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의 경우는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③ 내지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3조 (운용행위 감시의무 등)</p>	<p>① 내지 ③ (생략)</p> <p>④ 신탁업자는 ___ 확인하여야 한다.</p> <p>1. 내지 5. (생략)</p> <p>6. 제1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등</p> <p>7. 그 밖에 수익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/p> <p>⑤ (생략)</p>	<p>① 내지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신탁업자는 ___ 확인하여야 한다.</p> <p>1. 내지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제1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</p> <p>7.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6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0조 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___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___ 계산한다.</p> <p>② 내지 ④ (생략)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___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___ 계산한다.</p> <p>② 내지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2조 (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)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___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1. 대차대조표</p> <p>2. 내지 3. (생략)</p> <p>② 내지 ③ (생략)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___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1. 재무상태표</p> <p>2. 내지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내지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9조 (보수)</p>	<p>① (생략)</p> <p>② 투자신탁보수의 ___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___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1. 내지 3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투자신탁보수의 ___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재무상태표상에 계상하고 ___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1. 내지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0조 (공시 및 보고서 등)</p>	<p>① (생략)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___ 공시(이하 "수시공시"라 한다)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괄호 추가)</p>	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___ 공시(이하 "수시공시"라 한다)하여야 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</p>

	3. 내지 5. (생략) ③ 내지 ⑨ (생략)	그 사유를 포함한다) 3. 내지 5. (현행과 같음) ③ 내지 ⑨ (현행과 같음)
부칙	<신 설>	이 신탁계약은 2023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나. 투자설명서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<추 가>	2023-06-16 신탁계약 변경 - 투자대상자산 추가(환매조건부 매수) 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의무, 용어정리 등)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-	(업데이트)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	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	<삭 제>
	<추 가>	환매조건부매수 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)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	___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___	___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의 경우는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___
	<추 가>	. 증권대여 :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가. 수익률 증진 :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

		<p>으며,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합니다.</p> <p>나. 기타 효율적,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</p> <p>· 증권차입 : 효율적 운용, 보유자산의 시장위험 헤지, 환매 대응, 유동성 확대,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</p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다. 기타 투자위험	<추 가>	증권대차 거래 위험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<p>※ 실제 수익률 변동성(실제 연환산 표준편차 :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) : 22.20%</p>	<p>※ 실제 수익률 변동성(실제 연환산 표준편차 :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) : 18.23%</p>
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	대차대조표	재무상태표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-	(업데이트)
<p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과세</p> <p>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</p>	<p>[세액공제]</p> <p>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 (지방소득세 포함)</p> <p>-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(괄호 추가)</p> <p>단, 2020년 1월 1일 납입액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과세기간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의 50세 이상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</p>	<p>[세액공제]</p> <p>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 (지방소득세 포함)</p> <p>-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(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 제></p>

	<p>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로 함</p> <p>-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 (지방소득세 포함)(2017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)</p>	<p><삭 제></p>
	<p>[분리과세한도]</p> <p><추 가></p>	<p>[분리과세한도]</p> <p>- 연금소득이 1,2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 또는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. (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)</p>
	<p>[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]</p> <p><추 가></p>	<p>[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]</p> <p>가입자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</p>
<p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과세</p> <p>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</p>	<p>① 세액공제</p> <p>당해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 +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)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___ 공제합니다.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 +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)과 연 700만원 중</p>	<p>① 세액공제</p> <p>당해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 +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)과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___ 공제합니다.</p> <p>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 +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)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</p>

	<p>적은 금액의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(괄호 추가)</p> <p>다만, 2020년 1월 1일 납입한 금액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의 50세 이상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 +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)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 적용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 +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.2% (지방소득세 포함)</p>	<p>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(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)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
	<p>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</p> <p>- 다만, 연금 수령 시에도 사적연금액(퇴직연금+개인연금)이 연간 1,200만원 이하인 경우 「분리과세」로 선택 가능합니다.</p>	<p>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</p> <p>- 다만, 연금 수령 시에도 사적연금액(퇴직연금+개인연금)이 연간 1,200만원 이하인 경우 「분리과세」로 선택 가능하며, 연금소득이 1,2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 또는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. (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)</p>
<p>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p>		
<p>1. 재무정보</p>	<p>-</p> <p><기업공시서식 반영></p>	<p>(업데이트)</p> <p>·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</p>

		· 주식의 매매회전율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-	(업데이트)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연결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	-	(업데이트)
3.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(신탁업자) 나. 주요업무 (2) 의무 및 책임 (가) 의무	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<추 가>	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-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 한지의 여부 -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 지의 여부 -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6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 항
4.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. 회사의 개요	신한아이타스(주)	신한펀드파트너스(주)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2) 수시 공시	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 정 및 그 사유	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 정 및 그 사유(법 제 230 조에 따 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 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 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 한다)

끝.